

# 가사재판,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(재특 2017-2) 일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현행 예규상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한이 없는 바, 수당 지급기한을 신설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회계관계공무원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입금기한 경과 시 지급 지연 내역 보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수당의 지급을 독려함

## 2. 주요내용

-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
-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수당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하도록 함(안 제7조제3항 신설)
-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

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7조제4항 신설)

3. 가사재판,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(재특 2017-2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가사재판,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(재특 2017-2)

### 일부개정예규안

가사재판,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  
(재특 2017-2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 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등  
은 바로 재판장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  
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  
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.

④ 제3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 
사건번호, 상담위원등의 성명, 상담·자문의뢰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 
수당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②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사무관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지급의뢰를 하였으나 아직 회계관계공무원이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의뢰를 받은 수당을 입금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수당지급 절차)  <u>상담위원등에게 상담수당 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상담위원등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[전산양식 C1806-1, 전산양식 C1806-2, 전산양식 C1806-3]를 제출받는다.</u>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수당지급 절차) ① <u>상담위원등에게 상담수당 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상담위원등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[전산양식 C1806-1, 전산양식 C1806-2, 전산양식 C1806-3]를 제출받는다.</u>            ② <u>제1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  ③ <u>제2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.</u>            ④ <u>제3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, 상담위원등의 성명, 상담·자문의뢰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 - 1609